재해관련 지원금 지원기준 확대 시행 건의안

의 안 번 호	

발의일자 : 2012년 10월 일
발 의 자 : 이성재의원외3인

1. 제안이유

○ 자연재난 발생시 참외 생산의 필수 기자재(자동보온덮개, 선별기, 소형농기계 등)와 소상공인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자연재난 발생시 참외 생산의 필수 기자재(자동보온덮개, 선별기, 소형농기계 등)가 누락되어 있어 공종별 항목에 포함시키고자 함.

○ 소상공인의 경우 주택과 달리 지원 근거가 없으므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17조(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내용)를 부활과 특별재난지역 외에는 자치단체별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건의내용 : 별첨

4. 제 출 처 : 국회(행정안전위원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지식경제위원회),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소방방재청, 중소기업청, 경상북도지사, 성주군수

재해관련 지원금 지원기준 확대 시행 건의안

우리 성주는 예로부터 숱한 명현거유(名賢巨儒)를 배출한 양반·선비의 고장이며, 땅이 기름지고 기후가 온화하여 풍수지리상 명당이자, 생명과 문화의 본향으로 살고 싶고 살기 좋은 고장으로 누구나 성주인이기를 바라는 평화로운 전원농촌입니다.

또한 수려한 해동의 영산인 가야산과 민족의 젖줄인 낙동강을 품고 있어 수자원이 풍부하고 연중 많은 일조량과 마사질 토양으로 조선 실학자 이중환의 택리지에도 성주를 “산천이 밝고 수려해 일찍이 문명이 뛰어난 사람들과 이름 높은 선비가 많았으며 논은 영남에서 가장 기름져서 씨를 조금만 뿌려도 수확이 많고, 때문에 고향에 뿌리를 박고 사는 이들은 모두 넉넉하게 살며 떠돌아다니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천혜의 자연조건을 바탕으로 참외재배 기술을 개발 1940년대부터 현재까지 70여 년간의 축적된 기술로 전체 농가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4,600여 농가가 참외재배에 전념하여 연 4,000억 원의 조수익을 올려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인 동시에 세계 최대 최고의 참외 주산지로 자리 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지역도 여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자연재해는 피해 갈 수 없는 듯 태풍 “루사” “매미” 특히, 이번 “산바”의 영향으로 300㎜가 넘는 집중호우로 하천둑이 무너지고 농경지가 매몰 되면서 곳곳에 도로가 끊기고 성주읍 시가지가 침수되었는가 하면 수확을 앞둔 황금 들녘이 폭우에 잠겼습니다.

삶의 터전인 주택과 상가 767동이 침수되거나 파손되어 생업의 기반을 졸지에 잃었으며 농경지 역시 242ha가 잠겨 660세대에 1,235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초유의 큰 재난을 당했습니다.

다행히 9월 26일 정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함에 따라 수재민들에게 다소 위안이 되고 있으며, 전국 각지의 뜻있는 많은 분들이 피해민들의 아픈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래고자 자원봉사의 도움과 성품기탁 및 구호의 손길을 보내주었으나 항구복구는 염원하여 시름에 잠긴 군민들을 마주할 때 안타까운 심정 이루 말로 형언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수재민의 아픔을 덜어 드리려고 민·관·군이 혼연일체가 되어 복구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피해가 너무나 커 홀로서기에는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 피해 농민 및 소상공인들의 아픔을 달래기에는 자력으로는 한계가 있어

우리 성주군의회는 5만 군민과 더불어 수해 피해 주민의 절박한 심정과 간절한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비닐하우스 기자재 및 소형농기계 지원 방안 마련입니다.

자연재난에 대한 정부의 복구비 지원 기본 방침은 생산물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기초시설인 비닐하우스, 축사 등은 지원대상이지만 시설하우스 설치비의 2~3배 이상이 소요되는 기자재(자동보온덮개, 선별기, 소형농기계 등)는 복구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최저생계를 유지하는 농업인으로서는 비용부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생산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기초 시설물로 비닐하우스에 고정 부착된 시설물과 기자재(자동보온덮개, 선별기, 소형농기계 등)를 공종별 항목에 포함시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재난관련법 정비 및 소상공인 지원 근거 마련입니다.

자연재난시 소상공인의 경우는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라 광역자치단체 조례에 의거 재해구호기금 100만원, 주거를 겸한 상가는 주택으로 보아 재난지원금 100만원과 100만원 이내의 재해구호의연금이 지원되고 있는 실정으로

소상공인은 고가의 장비와 물품 등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로 피해액이 주택 및 주거를 겸한 상가보다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근거가 없어 성난 민심을 달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2005년까지 시행해 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17조(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내용)를 부활시켜 줄 것과

특별재난지역 외에는 자치단체별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일선 행정 공무원의 어려움을 덜어줌과 아울러 피해 주택과 상가와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주민 상호간 불신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법령에 제도화 해줄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리며,

본 건의 사항이 조속히 반영되어 수재민의 아픈 마음에 다소나마 위안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우리군 의회의 마음을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10월 일

성주군의회 의원 일동